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(윤건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22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2.

발 의 자 : 윤건영 · 양부남 · 신정훈
윤준병 · 한준호 · 차지호
이광희 · 김문수 · 정태호
김성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·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.

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2 등).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제2항 중 “광역시장”을 “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광역시장”을 “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광역시장”을 “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”으로, “특별시·광역시”를 “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”로 한다.

제40조제1항제1호 중 “광역시”를 “통합특별시·광역시”로 한다.

제98조 중 “광역시장”을 “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(생략)</p> <p>② 특별시장·<u>광역시장</u>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 <p>제14조(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·처분하되,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·처분하게 할 수 있고, 특별시장·<u>광역시장</u> 또는 도지사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·처분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·<u>광</u></p>	<p>제10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u>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4조(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통</u></p> <p><u>합특별시장·광역시장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u>통</u></p>

광역시장 또는 도지사”는 “교육감”으로 보고, “행정안전부장관”은 “교육부장관”으로 본다.

통합특별시장 · 광역시장-----

-----.